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김지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변경(안 제3조, 제4조)
- 위탁 및 지원, 센터의 사업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례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53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제정·시행(2014. 2. 27.)해 왔음.
- 한편, 2020년에 실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의 69.5%가 ‘현재 생활이 좋아서’ 시설에 남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21.9%), ‘경제적 자립이 자신 없어’(14.7%), ‘가족이 원해서’(9.7%), ‘함께 살 가족이 없어서’(4.8%) 등 지역사회 정착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설 외 생활을 희망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일상·사회참여 기반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까지 포괄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강화·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이는 단순히 자립생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는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정의 추진 방향을 보다 확대·구체화한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인 “지역사회 정착”를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로 적절히 규정함.
- 안 제4조(계획수립), 제7조(위탁 및 지원) 및 제9조(센터의 사업)는 제명과 목적에 맞게 조문 내 용어를 “자립생활”에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으로 변경함.
- 안 제6조(지원사업)는 “주거” 관련 지원사업으로 기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자립생활주택·주거지원서비스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함.
-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자립생활 지원’에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사업으로 주거지원서비스·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구체적 주거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3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의자: 김지연 · 최봉희 · 이성수
이순우 · 정선희 의원(5인)

1. 제안이유

관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 나.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 다.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변경(안 제3조, 제4조)
- 라. 위탁 및 지원, 센터의 사업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를 “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로 한다.

2. “지역사회 정착”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 중 “자립생활”을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자립생활”을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자립생활”을 각각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으로 한다.

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자립생활주택 · 주거

지원서비스 지원

제7조 중 “자립생활 실현”을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실현”으로 한다.
제9조제4호 및 제10호 중 “자립생활”을 각각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을 “이상을
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호
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장애인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u> <u>자립생활 지원 조례</u>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u>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u>지원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社会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제 2 조 (정 의)</u> ----- -----.
<u>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u>	<u>1. ----- 함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u> <u>제2조-----</u> ----- -----.
<u><신 설></u>	<u>2. “지역사회 정착”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u>

	<u>것을 말한다.</u>
3. (생 략)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	
<p><u>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록,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u></p>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u>란 법 제54조-----</u> ----- ----- ----- -----.</p>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p>-----<u>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u> ----- -----.</p>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u>법 제6조-----</u> ----- ----- -----.</p>

<p>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p>
<p>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u>자립생활</u>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 4 조 (계 획 수 립) ----- -----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p>
<p>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 6 조 (지 원 사 업)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자립생활</u>에 필요한 교육 · 홍보 3. (생 략)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 3. (현행과 같음) 4.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 <u>자립생활주택</u> · 주거지원서비스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8. (생 략) 9. <u>자립생활</u>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8. (현행과 같음) 9.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생 략) 11. <u>자립생활</u>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12. 그 밖에 <u>자립생활</u>에 필요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현행과 같음) 11.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 12. -----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p>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p>	<p>제7조(위탁 및 지원)</p>

<p>장애인의 <u>자립생활</u>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실현</u> ----- ----- ----- ----- -----.</p>
<p>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제9조(센터의 사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자립생활을 위한 기능 및 기술훈련</u> 5. ~ 9. (생략) 10. 그 밖에 <u>자립생활과 관련하여</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 5. ~ 9. (현행과 같음) 10. ----- <u>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u> -----
<p>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 <u>이상을 「장애인복지법」</u> 상의 장애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③ · ④ (생략) 	<p>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이상을 법</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p>제17조(급여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u>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u>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p> <p>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p> <p>제18조(제공인력) ① <u>「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u>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2조(주거 생활 지원) ① (생략)</p>	<p>제17조(급여신청) ① ----- ----- <u>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u> ----- -----. ② ----- ----- <u>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u>----- -----. ③ ----- ----- <u>「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u>----- ----- -.</p> <p>제18조(제공인력) ① <u>「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주거 생활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p>
-----------------------------------------------------------------------------------------------------------------------------------------------------------------------------------------------------------------------------------------------------------------------------------------------------------------------------------------------------------------------------------------------------------------------------------------------------------------	----------------------------------------------------------------------------------------------------------------------------------------------------------------------------------------------------------------------------------------------------------------------------------------------------------------------------------------------------------------------------------------------------------------------